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6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법률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- 기구 명칭변경 : 혁신정책담당관 → 규제개혁담당관(안 제6조제1항)
- 농업경영인 단체 업무이관(안 제15조제3호)
- 「호적법」 폐지관련 조문 개정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(경상북도 정책기획관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정책혁신담당관”을 “규제개혁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규제개혁 업무추진 총괄·조정

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4-H조직, 농촌지도자, 생활개선회 육성

제2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

제24조 중 “호적”을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정책혁신담당관실”을 “규제개혁담당관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---제13조----- ----- ----- -----	•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
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, 정책혁신담당관, 문화예술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홍보담당관을 둔다.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7.(생략) 8. 행정혁신, 지방분권 업무추진 총괄 및 조정 9. ~16.(생략)	제6조(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) ① ----- 규제개혁담당관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 1. ~7.(현행과 같음) 8. 규제개혁 업무추진 총괄 ·조정 9. ~16.(현행과 같음)	• 부서 명칭 변경
제15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. ~2.(생략) 3. 4-H조직, 농업경영인, 농촌지도자, 전업농육성 4. ~14.(생략)	제15조(소관사무) ----- ----- 1. ~2.(현행과 같음) 3. 4-H조직, 농촌지도자, 생활개선회 육성 4. ~14.(현행과 같음)	• 농업경영인 단체 업무이관
제22조(소관사무)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~15.(생략) <신설>	제22조(소관사무) ----- ----- 1. ~15.(현행과 같음) 16.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	•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
제24조(직무)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(동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 발급, 통(리)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	제24조(직무) ----- ----- ----가족관계등록----- ----- ----- -----	•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